##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9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춘석·이학영·안호영

정준호 • 윤준병 • 박희승

이연희 • 이원택 • 위성곤

윤종군 • 신영대 • 임미애

김유덕 • 한병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2
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입주한	2028년 12월 31일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